

#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유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01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김유숙, 김재국, 이진분,  
박은정, 이지화, 박은경,  
최찬규, 설호영, 황은화,  
선현우, 현옥순, 한명훈  
의원(12인)

## 1. 제안이유

-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,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3. 제정조례안

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○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## 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###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작업”이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인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.
3. “농어업법인”이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.
4. “농어업근로자”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농어업작업안전재해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.
6. “농어업인안전보험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.
7. “무급가족종사자”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「근로기

준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농어업근로자,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안전재해 예방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
2.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
3.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·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)**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기술 보급·지도 사업
2.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3.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
4.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
5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
6.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교육)**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및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.

1. 유해·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
2.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
3.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
4.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
5.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제정지원)**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)**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유숙 의원 대표발의

#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1012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3. 27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 중복되어 지방보조금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 
조례의 간결성 도모

## 주요골자

- 안 제8조와 연관된 제11조를 삭제

#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1조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<삭 제>